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965

발의연월일: 2022. 10. 27.

발 의 자:이주환·권명호·김용판

김학용 • 박대수 • 성일종

이헌승 • 전봉민 • 정우택

조명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수자원공사(이하 "수자원공사"라 한다)가 수자원 개발 시설 건설사업이나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조성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행정대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현행법에서는 댐이나 수도(水道) 등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한국도로공사법」 등 유사 법률과 같이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 또는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지연 방지 및 국유재산의

적정한 관리 등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9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.

- 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9 조에 따른 대집행(代執行)
- 2.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
-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대집행 등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9조의2(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)
	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
	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
	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
	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.
	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
	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
	률」 제89조에 따른 대집행
	(代執行)
	2.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에 따
	른 불법시설물의 철거
	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
	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
	용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
	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
	통보하여야 하며, 대집행 등을
	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
	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
	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
	한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
	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

제24조(토지등의 수용·사용) ① 제24조(토지등의 수용·사용) ① ~ ③ (생 략)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<삭 제> 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,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관하여 「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9조 제2항에 따른 대집행(代執行)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위탁 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 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, 대집행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대집행에 필요 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

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 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 할 수 있다.

~ 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
 (6) 제4항에 따른 대집행 권한
 <삭 제>

 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
 령령으로 정한다.

 ⑦ (생 략)
 ⑦ (현행과 같음)